

第 15 回 臨時會

2005. 5. 4(水)

# 檢 討 報 告 書

- ① 계룡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② 계룡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③ **2005**년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鷄 龍 市 議 會

專門委員 金 泳 鎮

# 檢 討 報 告

## □ 改定背景

- 『지방자치단체의 개별주택가격평가 전담기구 및 정원보강지침』과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제동원관련 정원보강지침』에 의거 지방공무원정원이 증원됨에 따라 현행 총정원 및 직급별 정원을 재조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 □ 主要内容

-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일반직 정원을 4명 증원함(안 제2조).

### < 승인기구 및 정원내역 >

| 구 분        | 계 | 6급 | 7급 | 8급 | 9급 | 비 고                       |
|------------|---|----|----|----|----|---------------------------|
| 계          | 4 | 1  | 1  | 1  | 1  |                           |
| 전담기구<br>설  | 3 | 1  | 1  | -  | 1  | 명칭 : 과표담당                 |
| 전담인력<br>보강 | 1 | -  | -  | 1  | -  |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제<br>동원관련업무추진 |

## □ 檢討意見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별주택가격평가 전담기구 및 정원보강지침』에 의거 3명(6급1, 7급1, 9급1)이 정원인 과표담당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제동원관련 정원보강지침」에 의거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제동원관련 업무추진을 위해 총무과를 수행부서로 전담인력보강을 위해 8급1명을 추가 배치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 총 정원이 증가됨에 따라 이를 조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됨.

# 檢 討 報 告

## □ 改定背景

- 『지방자치단체의 개별주택가격평가 전담기구·정원보강지침』과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제동원관련 정원보강지침』에 따라 본청기구 및 분장사무를 일부 정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 □ 主要内容

- 시민봉사과 소속으로 과표담당을 신설하고, 주택가격 조사·산정 및 결정·공시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분장사무를 정함(안 제3조)
-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제동원관련 업무를 총무과장 소관으로 하여 분장사무를 정함(안 제 3조).

## □ 檢討意見

-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과표담당을 시민봉사과 소속으로 신설하고,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제동원관련 업무를 총무과소관으로 하는 것으로, 문제되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檢 討 報 告

## □ 管理計劃 變更背景

-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척지와 근린공원지를 매입, 주차장과 화요장터 및 체육공원을 조성(설치)하고, 금암동 인구증가에 따른 동사무소를 신축하기 위하여 근린공공시설 부지매입과,
- 이미 의결된 바 있는 두마면사무소 분소 건물을 주민들의 복지·문화공간 확보를 위해 지하1층, 지상1층에서 지하1층, 지상2층으로 변경을 추진코자 함.

## □ 變更(取得)內容

| 재 산 현 황                  |     |                  |        | 건<br>(필지,동) | 면 적<br>(㎡) | 예정가액<br>(천원) |
|--------------------------|-----|------------------|--------|-------------|------------|--------------|
| 구 분                      | 종류  | 사 업 명            |        |             |            |              |
| 취                        | 소 계 |                  |        | 1(1)        | 727        | 1,004,000    |
|                          | 건 물 | ①두마면사무소<br>분소 신축 | 당 초    | 1(1)        | 430        | 580,000      |
|                          |     |                  | 변경(증)  | 1(1)        | 297        | 424,000      |
|                          | 소 계 |                  |        | 2(25)       | 29,608.3   | 8,365,400    |
|                          | 토지  | ①금암동사무소 신축 부지매입  |        | 1(1)        | 998.3      | 453,600      |
| ② 업무지역 현안 해소를 위한<br>부지매입 |     | 1(24)            | 28,610 | 7,911,800   |            |              |

## □ 檢討意見

-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제척지와 근린공원지를 매입하여 주차장과 화요장터 및 체육공원을 조성하고, 금암동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현재의 금암동사무소 시설로는 그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금암동사무소를 신축, 이를 위한 근린공공시설 부지의 매입을 위한 것으로서 필요한 것으로 사료 되며,
- 두마면 사무소 분소 건물은 변경 전의 지하1층, 지상1층으로는 주민들의 복지·문화공간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여겨지며, 이에 지상1층에서 지상2층으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변경안대로 심의 의결하여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 됨.